



제 1 장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01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02 누가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변경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03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기술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중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04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변경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대리인의 유형	내용	증빙서류
① 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 이해관계인 :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 단,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대리 신청 불가 ('15.1.1.부터 적용)	대리인 신분증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 신분증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한 자	대리인 지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④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성명, 직책이 기재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증 뒷면은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

※ '20.12.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함

- － 인터넷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여야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등급변경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우편물 및 인정서 수령지를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려면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이거나 동일세대 가족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지/실거주지로 설정 가능

05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06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변경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30일 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01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변경

- 의사소견서는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판정에 대한 정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급성기 질환의 여부 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02 의사소견서 제출절차가 궁금합니다. 변경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환 확인을 위해 신청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부하며,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발급의뢰서를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 단,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하는 자에게는 전액본인부담 제출을 통보함
-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포털)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사소견서는 전국 병·의원(보건소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공단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치매진단과 관련된 보완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에게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03

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 65세 미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여부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갱신 신청인 경우는 예외. 만약 65세 미만자가 진단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04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 이후 제출제외 통보를 해드립니다.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신청인의 심신 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자

참고**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조사항목 중 신체기능영역의 ‘밖으로 나오기’가 완전도움인면서,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 점수가 6점 이상인 자

05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 －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06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신청종류	신청인의 자격	본인부담	공단부담	국가와 지자체 부담
최초 신청 갱신 신청	일반가입자	20%	80%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10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	-	90%
	저소득, 생계곤란자 등 감경대상자 (보건복지부 고시)	10%	90%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등급변경신청, 재신청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이 중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등급 상·하향) 등 본인부담 제외비용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07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 제외비용 환급대상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경

- 의사소견서를 전액 본인 부담하여 발급받은 경우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재신청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한 경우(65세 미만 자는 노인성 질환자임이 확인되어야 청구 가능)
-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합니다.
 - ※ 의사소견서발급비용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발급기관에 지불한 실제금액을 말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

01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변경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변경

-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재신청 또는 등급변경 신청으로 접수되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새로운 유효기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갱신신청결과 등급외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까지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으로 등급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04 갱신신청 기간에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 기간에도 기능상태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5 등급변경신청은 언제하나요? 변경

-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인정절차는 동일합니다.

참고 ▶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 유형

신청유형	내용
장기요양인정신청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각하된 후 신청
재신청	최초신청이 각하·기각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등급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
갱신신청	수급자가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등급변경신청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06 등급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변경

-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과 급여종류·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7 시설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등급이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3~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가 제한되나 3~5등급자라도 다음의 참고와 같이 보살핌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위 대상자의 경우 갱신 등급 판정에서 3~5등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급여종류내용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 또는 직원의 출장복명을 통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급여종류내용변경을 인정한 경우 계속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3~5등급자 중 아래와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3·4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 이 없을 때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5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①번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②번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치매)와 인정조사표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② 제출한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보완서류)의 항목 충족 + 인정조사 시 확인된 문제 행동이 2개 이상
-